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14
------	------

발의일자 : 2023. 3. 10.

발 의 자 : 정재동, 고영찬 의원(2명)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 극심한 경기침체로 등으로 매출 감소 및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대상 범위 규정 신설(제2조의2 신설).

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제5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3. 11. ~ 2023. 3. 17.)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제5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를 “경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4.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 (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
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9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사무는”을 “구청장은 제5조, 제5조의3에 따른 사무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 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 공인에게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 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 인에게는 제5조의3 제3호 및 제4호 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 장은 소상공인의 <u>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5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 ----- 경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 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p> <p>5.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에 필요한 사업</p>
<p><신 설></p>	<p><삭 제></p>
<p>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 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1. <u>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u></p> <p>2. <u>취업 알선</u></p> <p>3.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u></p> <p>4. <u>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신 설></p>	<p><u>제5조의3(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p>1. <u>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u></p> <p>2. <u>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u></p> <p>3.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u></p> <p>4. <u>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u></p>

현행	개정안
<p>제9조(사무의 위탁) ① <u>제5조에 따른 사무는</u>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등 지원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u></p> <p><u>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u></p> <p>제9조(사무의 위탁) ① <u>구청장은 제5조, 제5조의3에 따른 사무를</u>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3](일부개정) 2021.05.13 조례 제11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5.1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5.13>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43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책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
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4.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
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
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
9.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
10.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11.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45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보호)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